

언덕 하나를 넘어서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全元烈

「경력사항」

- 現)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지원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전담재판부 판사
- 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
- 부산고등법원 판사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 차석합격

I. 첫머리에

考試界社로부터 청탁을 받아 막상 合格記를 쓰려고 하니, 合格記란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내 이야기가 수험생 여러분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머리속을 맴돈다.

그러나 짧은 기간이나마 고시에 대한 執念과 自責, 그리고 心理的 負擔感의 싸움이 수험생 여러분께 공감을 줄 수 있고, 그것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다.

II.1 · 2學年 時節

학교 기숙사에서 지낸 1학년 때에는 별다른 공부계획을 세운 것은 없었고 명국 이랑 기숙사 친구들과 어울려 재미있는 나날을 보냈다.

한편으로는 생활을 좀더 節制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졌었지만 주된 모토는 從心所欲이었다.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책을 읽고, 당구치고 싶으면 당구치고, 운동을 하고 싶으면 운동을 하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孔子님께서도 70세가 되어서야 從心所欲해도 不踰矩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이 스물도 안된 놈이 스스로, 大矩를 踰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했으니 건방지다고나 할까.

어쨌건 이 時期는 기존의 모든 價値觀으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dogma로부터 해방되려고 노력했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런 생활도 1학년 말쯤 되니 피곤해지기 시작했다. 목적없이 표류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느낌이 들고 삶의 無常함과 虛無를 느껴가기 시작했다. “너는 왜 사는가?” “허무주의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좀더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생활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조금씩 다져나갔다.

그렇지만 생활상태를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12월 초순과 기말고사 기간을 Mighty에 재미붙여 보내다가 1학년을 마감하고 말았다.

法學科에 입학할 때부터 司法試驗은 法學科의 專攻綜合評價試驗이라고(몇몇 중요한 과목, 예를 들면 법철학, 노동법, 국제법 등이 빠지기는 하지만)생각했었고, 2학년이 되어 전공과목 강의가 시작되면 이것이 바로 사법시험준비로 연결되니까, 흐트러진 생활의 정리방법으로는 法學공부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겨울방학을 시작하면서 司法試驗에 대한 뜻을 굳혔다. 考試를 친다는 것이 현실에서의 도피가 아닌가, 社會的 實務의 放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지만,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수행과 사법시험준비가 반드시 모순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부산에 내려갔다가 12월 30일에 상경하여 권영서 著 憲法, 곽윤저 著 民法總則, 債權法, 장준철 編 刑法總論을 사서 처음으로 法書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활의 정리가 덜 된 상태였고, 시험에 대한 의미부여가 충분하지 못해서였는지 한달 내내 다른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다.

2월 들어서는 생활이 안정되면서 2월 말쯤, 이번 1차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하는 생각을 했다(지금 돌이켜 보면 대단한 오만이지만), 영어·국사·문화사는 강의 안 해도 될 것 같았고 국제사법도 며칠 안 걸린다니까, 두달 쯤 미친듯이 기본3법과 경제학을 공부하면 시험에 될것도 같았다. 그래서 3월 초순·중순에 걸쳐 보름쯤,

수업도 전폐하고 도서관에 틀어박혀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다. 그 기간 동안 民法總則, 刑法總論을 각 1회독 하고, 憲法, 債權總論, 民法概論(김주수 著), 刑法各論을 각각 2/3쯤씩 읽어제겼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 1차시험날까지 다른 과목은 어느 정도 공부라 될 것 같은데, 민법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포기하고 말았다.

2학년 1학기의 나머지 기간은 수업진도에 맞춰 法書를 조금씩 보는 외에 一般社會科學書籍, 中國關係書籍 등등 읽고 싶은 책들을 보면서 소일하고 말았다. 여름방학을 부산에서 無爲의 極에서 보낸 후에 2학기부터는 매일 저녁 도서관에 남아서 공부를 하는 습관을 붙이게 되었다. B와 함께 하는 도서관 생활은 단조롭지만 보람 있었고 매일매일이 즐거웠다. 종종 공부가 하기 싫으면 친구들과 놀았고,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基本 3法을, 특히 민법에 중점을 두어 읽어나갔다. 그리고 경제학은 학교강의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미시·거시를 수강했다.

Ⅲ. 1차시험

2학년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1차준비에 들어가야 했다. 그 때 겨울, 그러니까 86년 1, 2, 3월이 가장 즐거이 가장 많은 양을 공부한 때가 아닌 가 싶다. 겨울방학이 시작하면서부터 3월 초순까지 2개월 남짓되는 기간동안에, 民法시리즈, 刑法總·各論, 憲法을 각 2회독, 經濟學原論·民事訴訟法을 1회독, 行政法 上卷, 刑事訴訟法을 각각 2/3쯤씩, 그리고 헌법·민법·형법의 객관식 문제집을 한번씩 보았으니, 지금 생각해도 엄청난 공부를 했다.

3월 중순부터 國史·文化史·國際私法 등도 조금씩 보기 시작했는데, 4월이 되니 시험에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스스로를 나태하게 만들어 공부의 능률이 오히려 떨어졌다. 영어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니 공부를 안해도 될 것 같았고, 그래도 혹시 해서 고등학교 때 보았던 Vocabulary 22000을 다시 꺼내 훑어보니 모르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기에 따로 공부를 하지는 않았다.

공부는 계속 학교 도서관에서 했는데 매일 8시쯤 등교하여 10시 30분쯤 하교를 했다. 평소에는 착실히 하는 날도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다가 힘들었는데 이 겨울에는 특별히 놀게 되는 날을 제외하고는 12시간 정도씩 공부를 한 것 같다.

매일 아침 눈뜨인 봉천동 고갯길을 걸어 넘어서 등교를 했다. 行人이 거의 없는 길을 걸어가노라면, 그 시간은 온통 나만의 세계였다. 학교도서관에 거의 다 가서 유리창에 얼굴을 비춰보면 입김 때문에 눈썹에 하얗게 서리가 앉은 내 모습이 재미 있었고 대견스러웠다.

3월 개학을 하여 수업을 듣게 되니 1차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느끼지만, 거의 빠지고 않고 착실히 수업을 들었다. 이 3학년 1학기에 양창수 교수님께서 債權總論과

財産法特講의 두 과목을 수강했는데, 이 때 비로소 民法全般에 걸친 체계를 잡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1차시험 준비과정에서 본 책은 다음과 같다(교과서+객관식 문제집).

- 헌법 : 권영성+김철수, 권영성·민경식
- 민법 : 광윤직, 김주수+김용한, 삼영사(上, 下)
- 형법 : 이재상, 장준철+3人 共著, 정성근
- 국제사법 : 서희원+김명기
- 경제학 : 조순, 박홍립 + 홍종인, 박홍립
- 국사 : 고교참고서
- 문화사 : 고교참고서 + 최문형

1차시험을 합격안정권내에 들게 하려면 법과목에서 점수를 따라 할 것 같다. 경제학, 국사, 문화사 등은 어차피 모르는 문제가 몇개는 꼭 나오고, 이것을 맞추려면 공부해야 할 범위가 無限定해지니, 이런 과목은 커트라인 정도의 점수만 확보하고, 기본 3법에서 90점 이상씩을 따내면 여유있게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1차시험은 5월 18일 여의도중학교에서 치렀다. 선배님들이 시험전날은 法條文을 읽어야 한다기에 17일에는 民法條文을 總則·親族相續·物權·債權의 순으로 읽었고 시험당일의 점심시간에는 涉外私法의 條文을 읽었다.

18일 아침에는 큰 부담감 없이 시험장으로 향할 수 있었고, 오후시간에는 내 자리에 햇빛이 비쳐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는 했지만, 별다른 어려움없이 시험을 치렀다. 오후시간 종료전에 시간이 남아서 답안을 미리 제출하고 나오면서 생각해 보니, 넉넉하게 합격할 것 같았다.

II. 2차시험

1차시험때까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은 탓인지, 시험 후에는 심신이 지쳐 있었다. 거기에다가 개인적인 감정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엄습해 와서, 학교수업에 들어가는 일 외에는 法書나 다른 책 책들을 마음내키는 대로 조금씩 읽으면서 쉬었다. 學期末考查도 공부를 전혀 안한 채로 그냥 적당히 써 내고는 부산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 해 제28회 2차시험은 들어가지 않을까 했으나 좋은 경험이 된다는 선배님의 말씀에 따라, 시험 며칠전에 서울로 올라와서는 4일간의 시험을 억지로 버텼다.

그런데 10월에 점수를 알아보니 의외로 좋아서 이것이 3학년 2학기의 나의 나태를 부채질한 듯하다. 한 번도 읽지 않은 부분도 꽤 있는 상태에서 아는데까지 써 냈더니 行政法이 형편없는 점수로 과락이었지만 40점대가 3과목, 50점대가 4과목이어서 平均 47.70점으로 2차 커트라인과 2.7점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던 것이 放漫한 마음을 가져다 준 것 같다.

여름방학 동안 부산에서 지친 心身을 달래며(지금 생각해 보면 전적으로 心의 문제가었던 같다)어머님께서 달여 주시는 補藥을 먹으면서 푹 쉬었다.

8월 20일경 방학내내 읽은 法書가 한권 분량도 안 되어서 걱정을 하면서 다시 上京하였다. 지난 일들을 잊고 열심히 공부하자고 다짐하며 心機一轉하기 위해 하숙집도 옮겼다.

3학년 2학기에는 2차 과목들의 강의가 집중적으로 있었다. 되도록 학교수업에 충실하면서 학기내에 기본 3법을 제외한 기타 과목들도 일정수준에 끌어 올리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나의 anthropyne arete의 부족으로 인한 이별선언, 정신의 피폐, 감정의 혼란 등으로 전혀 공부에 매진할 수 없었고, 새벽 4~5시까지 술을 마시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다. Asian Game 放學이 보름이나 있어서 이 때 몇 권의 法書를 읽을 수 있었지만, 2학기 내내 읽은 것이라고는 상법 2회독, 행정법과 민소법 각 1회독 정도가 고작이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몇 권의 小說을 읽다가, 1월초부터 본격적인 2차시험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저번 겨울과 마찬가지로 8시에 등교해서 10시 30분에 하교하는 도서관생활을 하기로 하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刑事訴訟法과 기본 3법부터 보아 나아가기로 했다. 우선 基本書를 정하고 單券化를 해야 했는데 다른 과목은 대체로 이미 정해졌지만, 商法·行政法은 겨울방학 중에서야 정할 수 있었고 刑法各論은 3월이 되어서야 겨우 정할 수 있었다. 單券化作業은 필요하겠지만 單券化라는 形式에 얽매이기보다는 基本書에 부족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인식하고 그것을 보충할 자료를 모아서 정리하여 그 내용을 눈여겨 보는 것이 바로 單券化라는 것을(한 권의 책 속에 써넣지 않더라도)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겨울의 공부는 너무 힘들었다. 억지로 스스로를 타일러서 며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또 공부하기가 싫어지고 외로와져서 며칠 놀아버리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이 때의 나에게 考試는 高試나 苦試라기보다는 정녕 孤試이었다. 그 덕택에 공부는 지지부진하여 1월초부터 시작한 것이 4월 초순이 되어서야 겨우 전과목 1회의 공부가 끝날 정도였다. 기본서·참고서 외의 자료도 조금은 모을 필요가 있었는데, 이 작업도 다른 친구들보다 뒤늦게 3, 4월이 되어서야 할 수 있었다. 최근 3개년치의 3개 고시잡지에 실린 豫想問題, 論文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체크해서 후

배에게 부탁하여 복사시켜서 정리했다. 이것도 양이 꽤 많았지만, 한번 보고 말 것은 교과서에 핵심적인 몇 마디만 옮겨 적어 넣고는 치워버리고, 어떤 것은 따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교과서에 핵심적인 몇 마디만 옮겨 적어넣고는 치워버리고 어떤 것은 따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교과서에 끼워넣기도 했다. 마지막에까지 따로 읽은 豫想問題나 論文은 몇 개 되지 않았다. 교과서에 資料들을 잘라서 덕지덕지 붙이는 것은 책이 너무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서 하기가 싫었다.

그러나 이런 공부가 점점 더 견딜수 없어져서 4월에 어머니께 서울로 올라와 주실 것을 부탁했고 어머니는 만사를 제쳐놓으시고 서울로 올라오셨다. 이 때가 시험까지 3개월이 남았을 때였다.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은 내가 온 힘을 모아 마지막 노력을 쏟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이 마지막 3개월은 정말 열심히 공부한 기간이었다. 매일매일이 똑같은 생활의 반복이었지만, 엄청난 스피드로 많은 책들을 읽어내고 별로 지겨운 줄 모르고 공부했다. 한달에 3~4일씩 공부하기 싫은 때가 있기는 했지만 크게 흐트러지지는 않았고, 4, 5월에 걸쳐 8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형두, 창현, 은애와 함께 4명에서 함께 모의시험을 치른 것은 큰 도움이 되었다. 特講이나 모의시험 등이 아예 없는 우리 학교에서는 시험에 대한 연습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答안작성연습이 필요하다는 선배의 권유에 따라 토요일마다 한 과목씩 각자 돌아가면서 출제를 하고 2시간 동안 答안작성을 한 다음, 모범답안을 보면서 서로 간단한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모의시험을 치렀다. 이 덕택에 시간배분, 목차구성연습 등에 많은 진전을 보았다. 실제 2차시험장에서 시간배분은 거의 완벽해서 8과목 모두 마지막 문제의 마지막 한 두줄을 쓰고 있을 때, 종료를 알리는 타종이 있었다.

2차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 책은 다음과 같다. 이 외에도 예상문제, 논문 등으로 조금은 보충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법·상법·형법 등이 그리하다.

기본서, 참고서, 문제집은 다음과 같다.

- 國民倫理: 형설출판사 刊 + 형설출판사 刊
- 憲法: 권영성 著 + 김철수 著 + 강창웅 編
- 行政法: 김도창(上卷) 著, 박윤혼(上卷)(행정구제법 부분), 이명구 著(下卷부분) + 김도창 著, 박윤혼 著, 이상규 著, 김남진 著(行政法의 基本問題·현재는 교과서가 출간), 서원우 著, 이명구 著 + 이상규 著
- 商法: 정희철 著(上)·(下), 정동운 著 어음수표법 + 최기원 著, 손주찬 著(上卷), 이태로·이철송 共著 + 양승규·박길준 共著, 박민배 編

- 民法: 곽윤직 著 I ~ IV, 박병호 著 가족법 + 황적인 著 현대민법론 III, IV, 황적인 編 민법연습 + 서동우 · 오관석 共編
- 民事訴訟法: 이시윤 著 + 송상현 著, 방순원 著(下卷) + 김광태, 항정근 共編
- 刑法: 이재상 著 總論, 정영일 編 各論 + 정성근 著 總論, 이재상 著 各論, 유기천 著 各론 + 장준철 編 總論
- 刑事訴訟法: 백형구 著 형사소송법강의 + 강구진 著, 백형구 著(이재상 著가 새로 출간되었음)

끝까지 기본서를 중심으로 했고 문제집은 아예 基本書化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 두번씩 훑어보기만 했다. 일반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부분, 예를 들면 상법의 보험해상편이나 民事訴訟法의 강제집행편까지 구석구석 빠짐없이 공부했다. 기본서는 눈에 익숙하도록 만들려고 신경써서 밑줄을 쳤고, 시험 직전에는 밑줄 친 것만 읽어도 되도록 했다.

6월에 들어서서 마지막 정리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3학년 2학기에 공부 좀 할 걸 하는 후회도 했지만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6월 중순부터는 시험과목 순서와 역순으로 8과목을 각 2~3일씩 보면서 마지막 정리를 했고 시험일 10일쯤 남겨 두고는, 하루에 한 과목씩 보려 했지만 하루에 다 읽기는 아무래도 무리여서 과목마다 1/4쯤씩은 보지 못하고 아쉬워하며 드디어 결전의 날을 맞았다. 시험 이틀전날 밤에 過食을 하는 바람에 하필이면 시험 하루 전날 배탈이 나 버렸다. 음식을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배가 아프고 화장실 다니기에 바빠져서 4일의 시험기간 동안 끼니마다 한두 손갈밖에 먹지 못하고 마지막 2일은 죽을 먹으면서 보냈다. 시험은 東國大學校에서 치렀는데 작년 시험장과 같아서 눈에 익어 있어서 좋았다.

첫날 國民倫理에서는 큰 문제인 「韓國民主化의 當面課題와 展望」은 너무 일반적인 문제라서 답안쓰기가 좋지 않아 政治學의 기초지식을 동원하노라 고생했고, 약술형 문제인 「韓國傳統思想에서의 人間尊嚴精神」에서는 草案을 안 만들고 그냥 써 내려가는 바람에 東學의 人乃天에 대한 설명을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나중에 쓰다가 빼먹는 우를 범했다. 작년에 전혀 공부 안한 상태에서 윤리답안을 썼을 때보다 점수가 나빴다(56.66점).

헌법도 큰 문제 「司法權의 獨立」은 너무도 당연한 예상문제라서 오히려 전날 공부할 때 빼고 넘어간 부분이어서 기억을 더듬어 힘들게 답안을 만들었고, 약술형 문제 「國會議員選舉制度」도 약술형으로는 너무 방대해서 목차 구성하기가 힘들었다(57.33점). 첫날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데 잘 쳤다는 친구들의 자랑에 기가 죽어 집으로 돌아왔다.

둘째날 행정법의 큰 문제는 나를 가장 당황하게 만든 것이었다. 행정법에서 케이스문제는 익숙하지도 않음 뿐더러 도대체 어떤 범위까지 적어 주어야 할지를 몰라 고민하다가 확실하지 않으면 폭넓게 써 주자는 생각으로 行政審判前置主義를 詳論하고, 行政審判·行政訴訟의 提起要件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다음 假救濟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덧붙였다.

「人的 公用負擔」도 세세한 사항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머뭇거리며 답안을 적었는데 점수는 좋았다(62.33점). 상법도 특별히 못 적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점수는 가장 나빴다(55.00점)

세째날 민법은 쓸만큼 썼지만 케이스문제는 언급할 것이 너무 많아서 목차구성 하기가 나빴는데, 점수는 상대적으로 보아서 무척 후하게 받았다(58.66점). 민사소송법이 가장 편하게 적은 과목이었다. 약술형 「準再審」에서 準再審申請에 대한 설명을 해 주지 못했고, 제430조의 準用여부 등도 몰랐지만 출제의도는 제대로 파악한 것 같고, 3문제 모두 술술 써 내려갔다(70.00점)

마지막날 형법은 큰 문제 「實行의 着手를 論하라」가 너무 전형적인 문제라서 다른 사람들과 답안내용에서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아 실망했다. 「暴行과 傷害의 比較」는 자신있게 썼지만, 「贓物의 概念」에서는 本犯과의 관계, 被害者의 追求權과의 관계를 엉망으로 썼는데 형법 점수는 전반적으로 후했다(61.33점).

마지막 시간의 형사소송법은 이제 끝난다는 허탈감과 누적된 피로로 만년필을 계속해서 굴러갈 힘이 별로 없어서 글씨가 엉망이었다. 「傳聞法則의 意義와 價値」에서는 “價値라니 뭘 쓰라는 말인가?” 하고 생각하다가 一般論을 상술하고 價値에 관해서는 대강대강 창작해서 두 페이지쯤 적었다(59.66점)(전체 평균 60.12점)

V. 3차시험

2차시험을 끝내고서는 한편으로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지만, 시험을 못한 것 같아 그리 즐겁지는 않았다. 방학 내내 부산에서 한가롭게 푹 쉬다가, 8월 말쯤 서울에 올라와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 내가 그리 못한 것 같지는 않았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행정법의 큰 문제는 수험생의 답안이 모두 다양각색이어서 혹시 내가 쓴 답안의 論點이 모두 빛나간 것이라 科落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했다.

9월 16일 오후에 2차합격자 사정이 끝나고 명단이 나온다가에 오후 6시쯤 학교 수업을 마치고는 상원서점에 가서 合格을 확인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神에게 감사기도를 드렸다.

3차시험에 관해서는 法書들을 한번쯤 읽고 시험장에 가는 것이 最小限의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지만, 책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았고 3차시험 이틀전쯤 되어 조금씩 들쳐 보는 정도로 그쳤다. 면전 전날 저녁에 잡지사로부터 次席일 것 같다는 연락이 와서 별 부담감없이 3차시험에 임할 수 있었고, 시험위원님들은 질문에 대한 知識의 정도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지는 않았다.

VI. 몇 가지 助言

1.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理解가 先行되어야 한다. 물론 理解와 暗記가 병행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교과서의 구절 하나하나가 충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理解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충분히 이해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문제가 어떻게 변형되어 출제되더라도 얼마든지 論理的으로 써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집보다는 교과서에 의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理解라는 것이 대학학부 수준의 초보적인 이해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2. 아무리 많이 공부 하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 써 내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시험장에서 잘 써내기 위해서는 시험이 가까이 오면 공부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머리속에 잘 다져 넣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부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키지 않을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에는 單券화된 교과서만으로 반복해서 다져넣는 것이 좋다고 본다.
3. 速讀이나 精讀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별 의미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머리속에 남길 수 있는 최대 속도로 읽는 것이 속독과 정독의 辨證法的 統一일 것이다.
4. 法典 活用の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시험장에서의 가장 훌륭한 컨닝페이퍼는 法典이다. 法典의 條文의 字句를 하나하나 뜯어 보면, 잘 기억나지 않은 것들도 차근차근 끄집어 낼 수 있다. 또 刑訴法·商法·民訴法 같이 條文에 의존함이 큰 과목들에 대해서는 특히 法典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두 시간은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니며 이 시간의 최대한의 활용을 위해서는 각 條文이 어디쯤 박혀 있다는 것이 머리속에 들어있어야 한다. 나의 경우에는 試驗用 法典을 따로 시간을 내어 읽으면서 문단나누기를 해가며 법전에 익숙해지기 위해 애썼다.

5. 새로이 좋은 책이 많이 쏟아지므로 신간서적에 항상 유의해야 하며, 요즘 많이 論議되는 문제, 改正論議가 있는 부분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6. 각 과목들에 대하여

倫理는 常識을 풀어놓기 보다는 政治學·社會學·思想史 등의 지식을 동원해서 答案을 작성해야 참신한 答案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憲法은 存在와 當爲의 관계를 항상 유의하면서 한번쯤 일반사회학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민법은 財産法 전체 -總則·物權·債權-에 대한 체계를 잡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문제이고, 형법은 우리나라에서 刑法學者의 세대교체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므로 新理論으로 기본체계를 잡는 것이 나으리라고 본다.

소송법은 처음에는 어려운 듯 하지만 몇번 읽어 흐름을 잡고 나면 시험문제들이 전형적으로 司法試驗에서 점수 따기 가장 좋은 과목이다. 冊을 읽을 때는 대치되는 이념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민소법의 강제집행편은 설차 시험에 출제되지 않더라도 다른 부분의 이해를 위해서도 기본적인 공부는 해야 할 것 같다(어차피 해도 잘 모르기는 하지만).

행정법·상법은 공부범위가 가장 애매한 과목들이다. 처음에는 여러 책을 섭렵하는 것도 좋겠지만, 곧 나름대로 정리하여 單券化해야 시험 직전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VII. 글을 맺으며

언덕 하나를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문제들이 끝없이 닥쳐오는 것을 보며 不斷한 誠實과 努力이 요구된다는 것을 새삼 절감한다.

合格과 高得點의 행운을 얻은 것은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나약해질 때,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마다 당신들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내가 삶을 지탱하고 스스로를 꾸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바탕이었다. 그리고 누나들의 끝없는 애정에도 머리 숙일 뿐이다. 지금까지 나를 정신적으로 키워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은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시간에 쫓긴다는 핑계로 精에 후하지 못했던 못난 나를 이해해 주고, 내가 힘들어 할 때마다 따뜻한함 베풀어 주던 여러 친구들, 그리고 삶에 대한 진지함과 성실성을 가르쳐 준 사람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끝으로 오늘도 공부에 열중하고 계실 受驗生 여러분께 영광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